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4항제2호 중 “변경하려”를 “변경하거나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려”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본문 중 “시장”을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법 제48조제1항 본문”을 “법 제48조”로 한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 서식의 변경보고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에게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을 제77조의5로 하고,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①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

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부품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또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자동차제작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한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 법 제53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18의2의 제목 중 “인증·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을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 서식의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의 “시·군·구”를 “관할 지자체”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제67조,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4호 서식의 개정 규정 및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별지 제34호의 6의 신설 규정은 2024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시험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번호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배출가스 변화 여부	변경 후 배출가스의 증가 [], 증가하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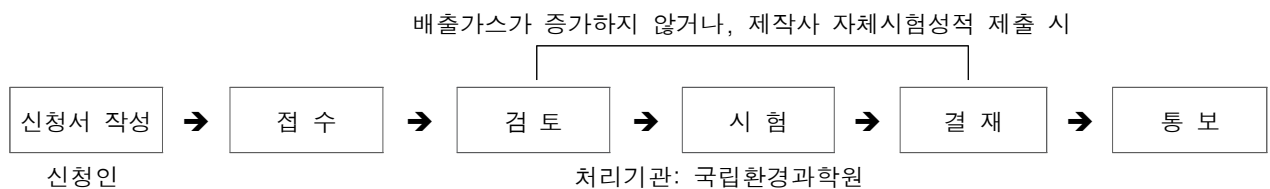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1. 변경내용 기재 분량이 많을 경우, 필요시 별지를 첨부합니다.
2. 배출가스 변화 여부의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번호			

당초 배출가스인증에 대한 변경보고 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의 변경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서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 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 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 퍼센트 이상 <u>변경하려는</u> 경우	2. ----- ----- ----- ----- ----- ----- <u>변경하거나 비산배 출시설을 폐쇄하려</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 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 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 ----- ----- ----- ----- -----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면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면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면지 발생사
 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
 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
 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
 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
 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
 지 제24호서식의 비산면지 발생
 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면지 발

말한다. 이
 하 같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

⑦ -----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⑧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④ (생략)

----- 국립환경과학원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 서식의 변경보고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에게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 절차 등) ①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배출가스보증 기간 내에 부품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또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자동차제작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한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

제77조의3 (생략)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2. (생략)

은 자동차제작자 법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의5 (현행 제77조의3과 같음)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변

②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③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
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
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
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
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
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
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
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
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
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
과 같음)

② -----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 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 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5조(수수료) ① (생략)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 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u>법 제48조제2항</u>에 따른 제작 차 변경인증 신청 가.·나. (생략) ③ (생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3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48조제2항</u> 본문----- ----- 가.·나.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